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12. 22.

발 의 자 : 성원환·김명국·이달호·

김선욱·배효임·배철현의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 21.10.08. 공포)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복무 관련 제도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안 제1조)
- 나. 복무선서 (안 제2조)
- 다. 공무원의 책무 (안 제3조~제13조)
- 라. 휴가 등 (안 제14조~제22조)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장(제47조~제52조), 제30조의3, 제30조의4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전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과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과전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과전근무하는 사람이 과전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전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과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 · 수해 ·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

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월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재직휴가의 사용은 1회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며, 각 호의 휴가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10일
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 15일
3.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 10일

⑧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고령군의회외의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주요시책 및 선거사무 등 의장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탁월한 성과가 있을 경우

⑨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⑪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등이 예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1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5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2조(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